

감사보고서

학교법인 영신학원 이사장 귀하

우리는 사립학교법 제19조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영신학원(세한대학교)의 2025회계연도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및 2026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 계산서·운영계산서 및 각 부속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.

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.

우리의 의견으로는 학교법인 영신학원(세한대학교)의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은 적절하며 별첨 재무제표는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에 따라 학교법인 영신학원(세한대학교)의 2026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성과의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.

2026년 4월 10일

학교법인 영신학원
감사 김 재 식 (인)
감사 이 상 완 (인)

피감사자 (입회인)
직명 재무부처장
성명 강 창 규 (인)

[별지 제2호 서식]

학교법인 영신학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계획	
2025회계연도 2025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	
감사결과 지적사항(내용)	피감사 기관장의 시정조치계획
지적사항 없음	지적사항 없음
피감사기관장 학교법인 영신학원 이사장 문 석 남 직인 (사인)	

(법인일반업무회계)

[별지 제2호 서식]

학교법인 영신학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계획

2025회계연도 2025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

감사결과 지적사항(내용)	피감사 기관장의 시정조치계획
지적사항 없음	지적사항 없음
피감사기관장 학교법인 영신학원 이사장 문 석 남 직원 (사인)	

(법인수익사업회계)



[별지 제3호 서식]

세한대학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계획

2025회계연도 2025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

감사결과 지적사항(내용)	피감사 기관장의 시정조치계획
지적사항 없음	지적사항 없음
피감사기관장	세한대학교 총장 최 다 순 직인 (사인)

(교비회계)

